

' 23.7.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

1 산재보험관계 적용

■ 적용대상(노무제공자)

- 前 산재보험법상 특고 “전속성*요건”을 폐지하고, “특고”와 “플랫폼 종사자**”를 → “노무제공자”로 재정의
 - * (전속성)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(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)
 - ** (플랫폼 종사자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-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,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
 - ※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 의한 노무제공은 산재보험 대상 아님
 -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(비전속 노무제공자 적용확대)과 추가 적용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

직 종	적용확대 내용	직종	적용확대 내용
① 보험설계사	새마을금고·신협 공제 모집인(' 24.1.1. 시행), 교차모집 보험설계사	⑨ 대리운전기사	모든 대리운전기사, 탁송기사, 대리주차원
		⑩ (후원)방문판매원	-
② 건설기계조종사	-	⑪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	-
③ 방문강사	-	⑫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	-
④ 골프장 캐디	-	⑬ 건설현장 화물차주 (살수차, 고소작업차, 카고크레인)	신규
⑤ 택배기사	설치(택배) 기사	⑭ 화물차주	모든 영업용 화물차주 (특정 품목·산업 구분 폐지)
		⑮ 소프트웨어기술자	-
⑥ 퀵서비스기사	모든 퀵서비스기사	⑯ 방과후학교강사/ 유치원·어린이집강사	신규 (' 24.1.1. 시행)
⑦ 대출모집인	-	⑰ 관광통역안내사	신규
⑧ 신용카드모집인	제휴 모집인	⑱ 어린이통학버스기사	신규

■ 보험가입자(사업주)

-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
 - 다만,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가 건설업에 노무제공 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

■ 입·이직 신고 및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

- 사업주의 보험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입·이직 신고 제도 폐지
- 부상·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**휴업신고 제도***로 대체
*건설·별목업 외의 사업에 노무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,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('23.12.31.까지에 한함)에 한하여 입·이직 신고 및 휴업신고 제도 적용

2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

■ 산재보험료의 산정

- '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'에 '보험료율'을 곱하여 산정

$$\text{1인당 산재보험료} = \text{개인별 월 보수액} \times \text{산재보험료율}$$

■ 월 보수액의 산정 ※ 보험료 징수체계를 "기준보수 → 실보수"로 개편

- (원칙)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(A)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(B)과 경비(C)를 제외한 금액

$$\text{월 보수액} = (\text{사업소득 A} - \text{비과세소득 B}) - \text{경비 C}$$

- (예외)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,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('23.12.31.까지에 한함)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(기준보수)

직 종	월 보수액	평균보수(일)	직 종	월 보수액	평균보수(일)
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	2,479,444원	82,648원	골프장 캐디	2,699,994원	90,000원

■ 월 보수액의 산정을 위한 경비 ※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

- '사업소득 - 비과세소득'의 일정 비율(경비공제율-고용노동부장관 고시)을 경비로 인정

직 종	경비공제율	직 종	경비공제율	직 종	경비공제율
보험설계사	25.0%	신용카드모집인	28.4%	소프트웨어기술자	15.7%
방문강사	22.0%	대리운전기사	28.1%	방과후학교강사	16.5%
골프장 캐디	15.6%	방문판매원	22.0%	관광통역안내사	25.6%
택배기사	16.4%	대여 제품 방문점검원	22.0%	어린이통학버스기사	29.3%
퀵서비스기사	27.4%	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	24.2%		
대출모집인	27.5%	화물차주	30.3%	*골프장 캐디는 '24.1.1.부터 적용	

※ 고용보험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경비공제율도 '23.7.1.부터 위와 동일하게 변경 예정

■ 산재보험료율(직종별 요율)

-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
※ '23년 노무제공자 직종별 요율(하단) + 출퇴근재해요율 0.1% 가산

직 종	요율	직 종	요율	직 종	요율
보험설계사	5%	신용카드모집인	5%	소프트웨어기술자	5%
방문강사	7%	대리운전기사	18%	방과후학교강사	6%
골프장 캐디	5%	방문판매원	8%	관광통역안내사	6%
택배기사	17%	대여 제품 방문점검원	7%	어린이통학버스기사	18%
퀵서비스기사	17%	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	7%	건설기계조종사, 부과고지 건설현장 화물차주 자진신고	34%
대출모집인	5%	화물차주	17%		원수급인 사업장요율

-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 (개별실적요율) 산정에 미반영

■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

-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/2씩 부담하고, 사업주는 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

☞ 보험료 산정 예시

- 보험설계사의 7월 총 사업소득이 2,000,000원인 경우(비과세소득 0원 가정)
[고시된 2023년 직종별 요율 0.5%, 경비공제율 25% 적용]
 - 경비 : 2,000,000원 × 25% = 500,000원
 - 월 보수액 : 2,000,000원 - 500,000원 = 1,500,000원
 - 산재보험료 : 1,500,000원 × 0.6%(출퇴근재해 요율 포함) = 9,000원
 -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 부담분 : 9,000원 ÷ 2 = 4,500원

3 플랫폼 운영자 특례

- (온라인 플랫폼) 사업주로부터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·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
- (플랫폼 종사자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
예)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음식배달기사, 화물차주 등
- (플랫폼 운영자)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예) 퀵·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등에게 일감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주
- (플랫폼 이용 사업자)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(보험가입자)
예) 플랫폼을 이용하는 쿡업체, 대리운전업체, 운수사업자 등

■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(퀵·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직종에 적용)

- 플랫폼 운영자는 **사업주(보험가입자)**를 대신하여 다음의 보험행정 의무를 이행

- ①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
 -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용개시·종료 신고
 - ③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로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
 - ④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·납부
 - ⑤ 5년간 노무제공 정보 보관 및 자료제공 협조 의무
 - ⑥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**전용계좌의 개설**
- ※ 다만, **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화물 플랫폼**의 경우 이용종료 신고, 월 보수액 정정 및 ④·⑥의 의무 면제 → 월 보수액 정정 및 원천공제·납부는 **플랫폼 이용 사업자(운수사업자 등)가 직접 이행**

※ '23.7.1.부터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·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각종 산재보험사무는 퀵·대리운전업체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수행(고용보험과 동일)

■ 화물 플랫폼(보수 미중개형)을 이용한 운송 건 중 월 보수액 신고 의무

- (화물 플랫폼사가 월 보수액 신고) '사업주'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(①운송사업자, ②자기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(인수증)하는 주선사업자, ③사업자인 화주)의 운송 의뢰건
- (운수사업자가 직접 월 보수액 신고) 화물 운송 의뢰자가 주선사업자로서 중개대리(선착불)로 플랫폼에 운송 건 접수 또는 플랫폼 미등록 화주가 전화로 플랫폼에 운송 건 접수를 하는 경우

4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사무

■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신고 ※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제외

-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(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)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

※ '23.7.1.전 이미 노무제공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'23.7.14.까지 성립 신고

■ 월 보수액의 신고

-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, 직종, 월 보수액 등을 **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** 공단에 매월 신고

※ '23.7. 노무제공대가에 대한 월 보수액 신고는 '23.8.31.까지 신고

※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(소득증명자료 첨부)

※ **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**[<https://total.comwel.or.kr>]에서 신고 가능

5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

■ 업무상 재해의 인정

-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, 질병 및 출·퇴근 재해에 대해 보호

■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 ※ “평균임금(고용노동부 고시금액) → 평균보수”로 개편

- (평균보수 정의)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
- (보수와 임금의 합산)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(일용근로자는 제외)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
- (평균보수의 산정)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

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

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

→ '23.7 ~ '24.12. 1일당 41,150원 (30일 환산 시 1,234,500원)

■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협조사항

-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는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)
 - ※ 플랫폼 운영자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
 -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
 -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명칭, 주소 등,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, 직종, 보수, 노무제공 내용 등
-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함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)

❖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☎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(안내멘트가 끝난 후 0과 1을 차례로 누르면 상담원과 바로 연결)

센터명	관할구역	전화번호	팩스
서울특고센터	서울, 강원, 경기 (의정부, 동두천, 양주, 포천, 연천, 남양주, 구리, 가평)	02-6946-0500	0505-290-3102 0506-175-1203,1204
부산특고센터	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경북	051-790-0300	0505-132-1102 0505-173-1103
경인특고센터	인천, 경기 (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)	032-712-0500	0505-134-1102 0505-175-1103
대전특고센터	광주, 대전, 전남, 전북, 충남, 충북, 제주, 세종	042-718-0600	0505-139-1102 0505-250-1103